

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 검 토 보 고

도시건설위원회(도로과)

의안번호	제293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(2024. 05. 23)
의 안 명	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검 토	전문위원 이선하

1. 변경이유

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4년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3조
- 2) 설치목적 : 굴착 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
- 3) 설치연도 : 1999. 1. 16.

나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1) 기금사업의 목표

- 성북구 관내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의 시행 및 포장도로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를 통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

2)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

-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활용
- 주민생활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
- 기금예치를 통한 수익 및 효율성 증대

다. 2024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

1) 기금변경규모

(단위:천원)

구 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감액
기금규모(수입·지출)	1,682,501	1,856,367	173,866

2)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○ 수입계획변경

(단위: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1,682,501	1,856,367	173,866	
예치금회수	706,004	879,870	173,866	(증)23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지부담금 및 이자수입
부담금	950,000	950,000	-	
이자수입	26,497	26,497	-	

○ 지출계획변경

(단위: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1,682,501	1,856,367	173,866	
인건비	44,776	44,776	-	
일반운영비	23,794	23,794	-	
시설비	1,005,000	1,005,000	-	
예치금	598,931	772,797	173,866	(증)연도말 기금조성액
반환금기타	10,000	10,000	-	

3) 2024년도말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조 성 액		사 용 액		2024년말 조성액(잔액)
1,856,367	-	1,083,570	=	772,797
· 예치금 : 879,870 · 부담금 : 950,000 · 이 자 : 26,497		· 인 건 비 : 44,776 · 심의수당 등 : 23,794 · 시 설 비 : 1,005,000 · 예 비 비 : 10,000		2025년도 이월

3. 검토의견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은 2023 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분을 2024년도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하려는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¹⁾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 예치금이 기정예산 7억600만원 보다 24.6%인 1억7,386만원 증액된 8억7,987만원으로 변경되어,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을 제출한 것임.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- 도로굴착복구기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3조²⁾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,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, 도로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·연구·감독 업무, 도로굴착 복구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등 임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은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예치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제23조(도로굴착복구기금) ①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도로법」 제91조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
2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3. 그 밖의 잡수입 등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로굴착복구공사
2.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(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)
3. 도로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·연구·감독 업무
4.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